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2일, 안규백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규백의원)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¹⁾된 잡종재산(일반재산)²⁾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1)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2)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이를 ①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3항),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함)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10조제4항),

③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생략)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잡종재산'은 현행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일반재산'을 의미함(「국유재산법」 개정('09년)으로 '잡종재산'의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

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일반재산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
-----.

-----.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	--

□ **현행법 제10조제3항**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공직유관단체인 군인공제회와 그 밖의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³⁾

②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러한 용도폐지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⁴⁾ 「국유재산법」⁵⁾에 따라 경쟁입찰로 매각대상자를

3) 국토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16/’17.)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음

4) 2024년 5월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토지를 매각한 선례는 없었음.

5)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

결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수의계약은 불가한 상황임⁶⁾.

□ 이에 비해, 개정안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① 현행법령상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⁷⁾가 유일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인 군인공제회에 국방부 소유 토지를 우선 매각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현재 기준, 국방부는 2021년부터 소유한 위례부지 일부를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용도로 매각을 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가 개정안의 첫 번째 적용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제1호부터 제28호에 걸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외교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등으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7)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국방부 소유 위례부지 A1-1 현황]

(소재지/면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96 / 65,147㎡ (20,000평)
(보유시점) 송파지역 주둔 군부대(특수전사령부)를 지방 이전하면서 국토부(LH)로
부터 기부받은 부지로, 2021년 6월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완료
(매각계획) 무주택군인 분양 용도로 매각 예정

* 자료: 국방부

② 개정안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우선적으로 해당 토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매각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⁸⁾

□ 개정안은 군인공제회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9)에 따른 공공택지 개발 등을 포함하여 1986년 이래로 37,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점¹⁰⁾ 등을 고려하여 군인공제회가 저가에 우선적으로 공급받은 해당 토지 등에서 무주택 군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려는 입법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8) 「국유재산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9)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최근 10년간 군인공제회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 최근 10년간 군인공제회 주택공급 현황 및 계획 참조.

[군인공제회의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 공급 사례]

구 분	군인공제회 공공택지 (1989년 ~)	군인공제회 민간택지 (1986년 ~)
근 거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군인공제회법」 제14조
개 념	•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무주택 군인 등에게 공급	•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회원 등에게 공급
공급 실적	20,498호	16,833호

* 자료: 군인공제회

특히, 군인공제회가 용도폐지된 국방부 소유 토지를 저가에 우선 공급 받아 주택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 제10조의2의 분양가상한제 적용¹¹⁾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와 건축비가 동일하다면, 감정평가에 근거한 택지비가 경쟁입찰로 매입하는 택지비보다 저렴한 만큼 공급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음.

□ 다만, 현행 법령상에서도 해당 토지 등을 군인공제회와 그 밖의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정하여 추가적으로 군인공제회가 해당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¹²⁾의 경제적 비용 고려 및 투명한

11) 분양가 ≤ 택지비(①) + 건축비(②)

① (공공택지) 공급가격 또는 (민간택지)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②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건축비) + 건축가산비

12)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고 효율적인 절차 원칙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향후 매각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토지는 위례부지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¹³⁾에서, 개정안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토지들을 선점하는 경우에는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잔여 토지들만 남게 되어 매각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부가 해당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군인공제회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가격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될 수 있음.¹⁴⁾

- 둘째,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¹⁵⁾라는 점에서 해당 토지들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의 대부분이 무주택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결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13) 관련 현황 등은 참고자료 1 참조. 다만, 매각대상 부지 전부(약 342.8m²)가 주택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14) 참고로, 감정평가에 근거한 택지비가 경쟁입찰로 매입하는 택지비보다 저렴한 만큼 공급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국가전체의 이익과 순경제적 비용 등의 관점에서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15)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평균연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나, 공직유관단체인 군인공제회는 투명한 정보공개 및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 우선공급에 따른 주택분양 현황]

구 분	시공사	분양 시기	분양 현황				
			총 세대수	회원분양			일반 분양
				소계	군인	기타	
광교신도시 A3블럭 (‘09)	대림산업	09.12.30	442	442	409	33	-
동탄2신도시 A101블럭 (‘11)	경남기업	14.02.04	344	84	51	33	260
고덕신도시 A43블럭 (‘18)	호반건설	20.03.27	766	352	334	18	414
파주 운정 A40블럭 (‘20)	GS건설	22.03.25	920	920	919	1	-
합 계			2,472	1,798	1,713	85	674

*자료: 국방부

참고로, 법 제10조제2항16)에 근거하여 군인공제회가 우선공급받은 공공택지에서 실시한 주택분양 건은 총 4건인데, 이 중 2건¹⁷⁾은 군인들이 주변 민영주택과 유사한 분양가로 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4년 동탄2신도시의 경우 총 공급세대수가 344세대인데 이 중 군인 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이 260건으로 75.6%이고,

② 2020년 고덕신도시의 경우 총 공급세대수는 766건인데 이 중 군인 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이 414건으로 54.0%임.

이상 2건의 주택공급 건들은 2014년 부동산 침체기와 2020년 코로나

16)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7) 현재 조사가능한 2013년 10월 동탄2신도시의 평균분양가는 3.3㎡당 897만원이나, 이로부터 6월 이내 분양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995만원에 분양하였음. 또한, 2020년 3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2차 분양가는 3.3㎡당 1,299만원은 2019년 12월 분양한 고덕 대광로제비앙 1,266만원과 2020년 7월 분양한 고덕 제일풍경채 2차 1,314만원의 평균수준임.

위기 시절 분양되어서 군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분양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주택 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제도의 취지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¹⁸⁾

□ 한편, 개정안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¹⁹⁾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제57조)를 도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제57조의2),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제59조) 등의 규정²⁰⁾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제도도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군인공제회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 경험이 풍부하여 전

18) 2024년 9월부터 금융당국의 주택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강화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향후 군인공제회의 주택 공급 건들에 있어서도 군인들의 분양 신청이 저조할 소지도 있음.

19)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3 참조.

20) 관련 규정은 참고자료 4.참조

문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법」상 일반인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주거안정 혜택을 무주택 군인에게도 적용할 필요²¹⁾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²²⁾,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체가 되는 군인공제회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동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임.²³⁾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국방부장관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의 분양가상한제 연계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

21)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40.6%로 일반국민 평균 61.3% 대비 20.7%p 저조함.

22)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다른 행정부처는 없었음.

23) 2024년 11월 7일 현재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정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함(국회예산정책처).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안 제10조제4항도 제5항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기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

[붙임]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28.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²⁴⁾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다만,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제57조)를 도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제57조의2),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 등의 규정²⁵⁾을 두고 있는데, 안 제10조의2는 이상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제도도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주택법」의 제도들에 대한 준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제도인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제92조,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제104조제10호 및 제106조제4항을 준용함.

24)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3 참조.

25) 관련 규정은 참고자료 4.참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 등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위반,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u>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u> <u>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채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u> <u><신 설></u>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

주의무 등, 주택 등
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
에 대한 신고포상
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의2, 제57조의3, 제
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
의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방
부장관”으로, “국토
교통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방
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

<신 설>

<신 설>

<신 설>

며, 같은 법 제92조
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주택
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
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
1호의3·제2호 및 제
104조제10호를 준
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위반, 주
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료
에 관하여는 「주
택법」 제106조제4
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u>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일반재산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을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

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거주 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 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거주 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이나, 거주 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u>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u>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u>사용하려는 자에게</u>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일반재산을</u>----- ----- -----<u>매각하려는 경</u> <u>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u> <u>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u> <u>법인에</u>-----. ----- ----- ----- -----.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 설>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 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

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
주자의 거주 의무 등이나 거주
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